

의안번호	제 356 호
의결년월일	1996. 7. 5. (제 45 회)

의결사항	원안 가결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1996. 5. 30.

고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6
----------	-----

제출년월일 : '96. 5. 30.

제 출 자 : 고성 군 수

1. 제정이유

-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성군 법률상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를 신속히 대처 소송수행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안제3조)
 -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각종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안제2조, 4조)
- 수당지급 :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 지급(안제6조)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등)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거 지급일을 조정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년 월

종 류	사 건 명	의 회 년월일	회 신 년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 종류는 "소송사건, 행정심판, 이의신청,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